

김종우 · 김위정 · 이가람. 2023. “학생 인권과 교권 관계에 관한 학생의 인식”  
『인권연구』 6(1): 65-99.

Kim, Jongwoo · Kim, Wui Jeong · Lee, Garam. 2023. “Student Perceptions of Student Rights and Teacher Rights” *Journal of Human Rights Studies* 6(1): 65-99.

DOI: <http://www.doi.or.kr/10.22976/JHRS.2023.6.1.65>

[일반논문]

## 학생 인권과 교권 관계에 관한 학생의 인식

: ‘2022 경기도학생인권실태조사’를 중심으로\*

김종우\*\* · 김위정\*\*\* · 이가람\*\*\*\*

한글초록

이 연구는 학생 인권과 교권의 관계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토대로, 두 권리가 경합하는지에 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이다. 학생 인권과 교권을 다룬 선행연구에서는 대립적 관점과 상보적 관점을 지지하는 경향이 공존한다. 이 연구는 특히 학교급에 따라 학생이 인식하는 자신의 권리 존중 경험과 교권에 관한 인식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학생의 권리 존중 경험과 인식이 교권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에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2022년 경기도학생인권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학생의 교권 존중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는 문항을 토대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학생의 인권 존중 경험과 인식이 교권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상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내만이 아닌 가정, 사회 등 우리 사회 전반에서 학생이 인권 존중을 경험하는 것이 교권에 대한 인식 형성에도 중요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궁극적으로는 인권 존중에 대한 일

\* 이 논문은 김위정 외(2022). 『2022 경기도 학생인권 실태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음을 밝힙니다. 또한 연구진이 본 논문의 초고를 발표한 “한국인권학회·인권법학회 2023년 상반기 공동학술대회”에서 유익한 논평을 전달해 주신 권순정 선생님과 본 논문의 발전을 위한 귀중한 심사 의견을 전해주시는 익명의 심사위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BK21교육연구단 연구교수(제1저자 및 교신저자, [copy3@yonsei.ac.kr](mailto:copy3@yonsei.ac.kr))

\*\*\*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참여저자)

\*\*\*\*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전문연구원(참여저자)

상의 긍정적 경험을 확장할 수 있는 우리 사회 전반의 인권 감수성 제고도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학생 인권, 교권, 경기도학생인권실태조사, 학생인권조례, 책무성

---

## 목 차

- I. 들어가며
- II. 선행연구 검토
- III. 자료와 방법
- IV. 결과
- V. 논의: 학생의 책무 중심 관점에서 보편적 인권 존중의 관점으로 이행 필요성
- VI. 마치며

### I. 들어가며

2010년 제정된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국내에서 처음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로, “사회구조적인 차별 구조 내에 놓인 학생 인권을 확인하는 법률”로서(김희진, 2022: 75), 아동기본법 제정 등 국내 아동·청소년 문제 전반에 대한 제도적 관심을 촉구하는 시점이 되기도 하였다. 이후 지자체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는 등 학교 현장에서 인권에 대한 관심의 제도화가 주로 학생을 중심으로 인권을 보호하려는 관점에서 이루어지면서, 현장에서는 최근 미디어를 통해 보도되는 일련의 사건들에서 강조되는 것처럼 학생 인권과 교권을 대립적 시각으로 보는 관점이 나타나고, 학생 인권과 교권의 갈등 구조가 굳어지는 양상이 나타난다(권순정·오덕열, 2021; 박종훈, 2021). 학생 인권과 교권을 대립적으로 다루는 담론은 특히 교육감 선거, 학생인권조례, 일탈에 대한 처벌 등 교육정책과 관련된 정치 담론이나 대중

매체를 통해 다방면으로 생산되고 있다(이기일·성열관, 2011; 김녕, 2014). 반면, 학계의 논의에서는 일부 차이가 감지된다. 학생 인권과 교권의 대립적 관계에 관한 논의도 존재하나, 학생 인권과 교권은 상보적 관계이며, 상호 간의 인권 향상을 함께 도모해야 한다는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김철, 2012; 구정화, 2014a; 2014b; 이봉림, 2017; 박종훈, 2021). 기존의 유사한 경험연구를 통해서도 학생 인권 보장 수준이 높고, 인권 교육을 많이 받은 학생이 교사 권위에 대한 인정과 교육권 존중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구정화, 2014a).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연구는 ‘2022년 경기도학생인권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의 관점에서 학생 인권과 교권에 대한 인식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려 한다. 이를 위해서 학생의 교권 존중 수준과 관련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기초분석을 시행하고, 학생의 교권 존중 인식을 종속변수로 하여, 이러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는 변수를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학생의 교권에 대한 존중 수준은 학생 스스로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인식할수록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검정에 초점을 맞추었다.

## II. 선행연구 검토

앞서 연구 배경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이래로, 학생 인권과 교권의 관계를 대립적으로 상정하는 논의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일례로,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2022)에서 발표한 백서에서는 “균형 교육”을 언급하며 “학생 인권을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조절”할 필요성을 언급하고 경기교육의 목표로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 지원”을 제시한 바 있다(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2022: 21,25,97). 일선 교육 현장에서도 학생인권조례 이후 교권 침해가 증가했다거나 학생 인권과 교권이 충돌한다는 인식이 지속해서 나타남

을 보고하기도 한다(권순정·오덕열, 2021; 박종훈, 2021). 반면, 학생 인권과 교권 문제를 다룬 경험적 연구들은 학생 인권과 교권 회복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교권의 회복이 학생 인권 신장에 이바지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김녕, 2014). 예를 들어, 구정화(2014b)의 연구는 학생 인권 보장 수준이 높고 인권 교육을 많이 받은 학생들이 교사의 권위에 대한 인정 수준도 높음을 보고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학계의 논의와 현장의 인식에 상당한 괴리감이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래에서는 학생 인권과 교권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대한 이해의 토대를 쌓고자 한다. 특히 학생 인권을 둘러싼 쟁점에서 학생의 책무성에 관한 사항이 반복하여 등장하는 만큼, 학생 권리와 교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책임성과 책무성의 관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 1. 학생의 권리와 책무 문제

기존의 논의를 정리하기에 앞서, 학생 인권과 관련하여 학생의 책임성과 책무성은 두 가지 문제를 고려해야 함을 먼저 정리하려 한다. 이는 학생 인권과 교권이란 권리 개념이 하나의 담론 안에서 혼용되며 개념상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 때문이다. 첫째, 학생의 인권에 관한 논의에서 인권의 주체로서의 자연적 개인의 의무를 필수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현대 인권 이론 내에서 권리 주체인 자연적 개인은 개인 상호 간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에서의 의무가 존재한다. 이는 인권이 시민권 등 여타 권리와 달리, 의무에 기반한 특정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 개념이 아니라는 점에서 기인한다. 현대 인권 이론에서 인권적 책무의 주체는 인권 보호와 실현을 위한 국가, 정부 등 공적 주체의 영역으로 논의되고 있다.

둘째, 따라서 ‘학생’의 책무와 책임에 관한 논의와 ‘학생 인권’의 책무에 관한 논의를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 학생 역시 인권의 주체로

서, 인권을 보장받기 위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이때 학생은 권리 주체로서의 개인으로 간주 되며, 따라서 인권을 보장받기 위한 특정한 의무를 가정하기는 어렵다. 교육 영역의 행위자로서의 교육기본법상 학생이라는 지위에서 기인하는 책임, 책무와 인권적 주체의 의무는 구분할 필요성이 이 지점에서 제기된다.

이와 관련하여 학생 인권에 관한 조례 개정 등의 논의에서 주로 등장하는 학생의 책임, 책무에 관한 논의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책임’과 ‘책무’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책임성(responsibility)과 책무성(accountability)에 관한 논의 중 윤리적 차원에서 책임과 책무의 관계는 의무 및 의무의 이행 실패와 주로 연결된다. 도덕적 책임과 책무의 차이에 주목한 비빈스(Bivins, 2006)는 책임을 행위자의 지위, 역할, 직무에 대한 의무의 범위로 규정하며, 행위자의 역할(role)에 따른 핵심 기능(function)을 합리적, 윤리적으로 수행해야 할 역량으로 정의한다. 여기서 기존 논의들은 책임을 역할에 대한 기능적 의무임과 동시에 윤리적 의무로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책무는 행위자의 책임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책임성 혹은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행위의 내용으로 규정될 수 있다(Kaler, 2002; Bivins, 2006; Jackson, 2009). 따라서, 책무성은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를 가진다. 첫째, 행위자가 기능적, 윤리적으로 특정 행위에 책임이 있어야 하며 둘째, 행위에 의한 어떠한 위해가 발생해야 하고 셋째, 책임이 있는 행위자가 그러한 해로운 행위에 대한 정당한 조각 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고 요약할 수 있다(Bivins, 2006: 21).

이러한 책무성의 특징으로 인해 책무는 윤리적 차원에서 의무에 대한 응답성(answerability)과 결부되어 정의되기도 한다(Shoemaker, 2011: 615). 책임과 달리 책무는 수행해야 할 과업 등 행위와 직접 연결되어 있기에, 의무를 지라는 타자의 요청에 응답할 의무도 존재한다. 이러한 윤리적 책임과 책무의 관계는 책임에 대한 책무의 방식으로 규정되며, 이는 정치적, 사법적 차원의 논의로 이어진다. 책무

와 책임을 구분한 논의 중 정치적, 사법적 개념의 책임과 책무는 크게 ‘의무’의 수준에서 그 정의가 구분되는 양상을 보인다.

정치적 및 사법적 논의에서의 책무는 민주주의적 정치체제에서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통해 정부에 위임된 권한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정당화하는 의무로 정의되곤 한다(Dunn, 1999: 298). 이에 따르면 책무는 주어진 직무를 수행할 의무성이 핵심이기에 책무는 주로 의무(duty)와 연관될 수 있다. 반면 책임은 정부에 위임된 권한의 목록을 말하며, 정부가 담당하는 행정 사무와 서비스 등을 제공할 능력이 있는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건부로 공무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역량에 가깝다(Dunn, 1999: 299). 즉, 책임은 누군가에게 특정한 권한을 부여한다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Burke, 1986: 11-15; Freund 1960: 37; Pennock 1960: 4, 27). 이와 유사하게, 경영 분야의 실무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책임과 책무의 구분을 시도한 맥그레이스 등은 책임을 주어진 과업을 만족스럽게 수행할 의무로 규정함에 비하여, 책무는 과업을 만족스럽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책임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McGrath and Whitty, 2017: 687).

이러한 점에서, 학생의 책임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책무를 구성하는 의무의 내용 또한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학생의 인권과 책무는 별개로 논의되어야 한다. 이는 「세계인권선언」 등 현대 인권 이론의 바탕을 이루는 주요 현장에서 인권을 모든 사람이 보유하는 존재론적 권리이며, 모든 사람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를 지는 것으로 선언하고 있을 뿐, 인권을 보장받기 위한 조건적 의무를 규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인권은 시민권, 기본권과도 구별되는 권리 개념이다. 인권 책무성을 담지한 주체는 일반적으로 국가, 정부 등 공적 행위자이다. 이러한 점에서 학생의 책무는 교육 영역 내의 행위 주체로서 지녀야 할 책무로 한정되어 이해해야 하며, 학생의 인권은 학생으로서의 책무와 별개로 자연인으로서 존중받아야 하는 영역이다. 즉, 학생이 책무를 위배한 때도 인권은 보호를 받아야 한다.

## 2. 공적 주체로서 조례상 학생의 권리와 교권의 관계

현대 인권 이론에서 인권적 책무의 주체는 인권 보호와 실현을 위한 국가, 정부 등 공적 주체의 영역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렇기에 학생의 권리와 교권에 대한 문제를 책무성 관점에서 이해하려면 공적 주체로서 학생의 지위를 살펴볼 필요가 제기된다. 국내법상 학생(학습자)의 의무에 관한 내용은 교육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의무’, ‘권리’, ‘책무’ 등의 표현으로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다.<sup>1)</sup> 또한 국내의 학생인권조례 중 대표적으로 다음 서울특별시의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sup>2)</sup>와 경기도의 「경기도학생인권조례」<sup>3)</sup>에서 책무 항목이 명시되어 있으나, 그 내용이 책임과 책무 양자의 구분이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다. 이외에도 일부 지자체의 학생인권조례에서 책무조항을 두고 여기서 학생의 ‘책무’를 규정하는 내용이 일부 존재한다.

여기에서 학생의 책무가 권리 주체로서의 개별 학생의 책임 혹은 실질적 책임(accountability), 학생이라는 집단적 행위자의 책임 혹은 명목상의 책임(responsibility) 양자의 어느 측면을 강조할 것인지 정

---

1) 「교육기본법」 제2장 제12조의 학생(학습자)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2장 교육당사자 <개정 2007. 12. 21.>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개정 2021. 9. 24.> ②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③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 12. 21.]

2) 「서울특별시학생인권 조례」 제4조의 학생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4조(책무) ⑤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학생은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 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존중하여야 한다.

3) 「경기도학생인권 조례」 제4조의 학생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4조(책무) ③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장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8.6.>

리할 필요가 있다. 학생인권조례 등을 통해 규정하는 학생 인권은 대체로 헌법상의 기본권 개념에서 출발한다(이양희·신해원·백진주, 2014; 신강숙, 2021; 박종훈, 2021). 반면 교원의 권리, 권위는 인권, 기본권 등 권리 담론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교원의 직무상 권한에 관한 내용을 다루기에, 교권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지배권(지시권, 형성권, 강제권)으로서의 공권의 성격을 가진다는 논의도 존재한다(정순원, 2010; 박재운, 2011).

따라서 학생의 교권에 대한 위해는 교사의 권리가 아닌, 교사의 직무상 권한에 대한 침해로 보는 것이 적절하며, 이 경우 학생의 위법한 행위를 통해 교권 침해의 내용이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학생 인권은 교원에 의해 대리되는 국가의 지배적 공권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할 때, 헌법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므로 더욱 적극적 보호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학생 권리와 책무성을 논하는 기존 연구는 학생 권리의 책무성을 헌법상의 기본권에서 찾기보다는, 학생 신분의 교육적 특수성과 교원의 교권과 결부하여 기술하는 경향이 있다. 교권에 대한 정의는 아직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지만, 대체로 교사로서의 권위나 권력, 권리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실제 이러한 측면에서 권위나 권력의 기반을 어디로 두느냐에 따라 학생의 권리와 교권은 대립적 개념이 아닌 상보적인 측면이 강한 개념으로 볼 수도 있다. 교사의 권위와 권리는 학생과의 관계를 통해 형성되며, 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 자율성을 통해 교원의 권위와 권리가 형성된다는 것이다(김운중, 2013, 김정래, 2014). 이러한 논의에서는 학생 권리의 특수성에 따른 학생의 책무는 교육적 맥락 안에서 구성된다는 논의를 바탕으로, 학생의 책무가 교육 현장에서 달성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교사의 전문성과 직무 수행 역량을 증진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논의 경향은 학생 인권은 학교라는 교육적 제도와 상황을 전제로 파악할 수 있는 개념(김정래, 2014: 20)에 기초하며, 교권은 교사의 권리만이 아니라, 교권을 교사의 권위, 권

리의 결합으로 인식하는 관점을 의미한다(김운중, 2013: 119; 김정래, 2014: 3; Harris, 1976: 1; Nash, 1996: 6). 다만 각 지자체의 교권 조례 및 학생인권조례를 비교하고 분석한 이덕난(2014)의 연구에서 정리된 바대로, 조례 차원에서 교권은 교육권을 중심으로 정리되는 경향성을 보인다.

즉, 이러한 논의들은 학생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학생 인권은 자연권이 아닌 학교의 목적과 교육적 특수한 상황이라는 맥락을 토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김정래, 2014: 20). 이러한 측면에서 학생의 권리와 교권은 대립적 개념이 아닌 상보적인 측면이 강한 개념이다.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존중과 존경은 교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기제가 된다(오승호, 2011; 김철, 2012).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생 인권과 교권은 대립 개념으로 환원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오인을 극복하기 위해 권리를 인간의 권리라는 개념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성 있다(권순정·오덕열, 2021). 즉, 교권과 학생 인권의 관계를 학생 권리의 책무성을 중심으로 논하는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학생 인권과 교권을 개별적으로 다루지 않으며, 교권과 학생 인권의 상호보완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이는 학생 인권과 교권 회복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교권의 회복이 학생 인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와 상통한다. 이와 관련한 교육 현장의 실제 사례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광주광역시 초등, 중등,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를 통해 학생의 인권 보장 수준이 높고, 인권 교육을 많이 받은 표본이 교사의 권위에 대한 인정과 교육권 존중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구정화, 2014b). 즉, 학생인권조례를 권리자-침해자 모델이 아닌 공동협력자 모델을 기본 관점으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이봉림, 2017).

이러한 관점에서, 학생의 책무는 교육 영역 내의 행위 주체로서 지켜야 할 의무로 제한적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으며, 학생 인권은 학

생으로서의 책무와 별개로 존중받아야 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교육기본법」 12조 3항에서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에서 드러나듯이 학생들은 기본적인 윤리와 규칙 준수, 교원의 직무상 권한을 침해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 이와 함께 기본적으로 권리 주체인 자연적 개인은 개인 상호 간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에서의 의무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학생들도 여러 학교 구성원의 하나로서, 서로의 인권을 보호할 권리 주체의 의무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장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책무조항과도 일맥상통한다.

이상 기존의 논의를 정리하면, 학생의 책무와 권리를 논의한 기존의 논의들은 교권과 학생 인권의 관계를 이해할 필요성을 우선 제안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설정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연구자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학생과 교원 서로를 인권 존중과 책무의 대상이자 주체로 전제하는 흐름 내에서도 학생 인권과 교권을 대립적 개념으로 논의하거나, 상호보완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공존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22년 경기도학생인권실태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학생 인권 의식에서 학생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인식, 학생 인권과 교권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문항, 학생들의 교권 존중 정도 및 교권 침해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을 중심으로 학생 인권과 교권의 관계에 관한 경험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존 연구에서 논의되던 학생 인권과 교권 사이의 관계성에 관한 논의를 학생이 인식하는 교권을 중심으로 탐색한다.

### III. 자료와 방법

#### 1. 자료

본 연구에서 활용한 ‘2022 경기도학생인권실태조사’는 경기도에서 2010년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이래 2011년부터 매년 학생 인권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학생 인권 실태조사이다. ‘경기도 학생인권실태조사’는 “학생 인권 실태에 대한 반복적인 조사를 통해 학생 인권 현황과 변화양상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학생 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인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수립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고 있다(이정연 외, 2020: 5). 학생 인권 실태조사는 일차적으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이 학교에서 실현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조례 조항들에 기반하여 조사 문항을 구성하였으며(이정연 외, 2016), 매년 학교나 사회의 환경변화에 따라 학생 인권과 관련된 주요 현안, 사회적 요구, 전년도 인권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문항을 조금씩 재정비해 왔다.

2022년, 제18대(주민직선 제5기) 경기도교육감이 새롭게 선출된 이후 경기도교육감 인수위원회 백서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을 정책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조례 개정의 방향으로 학생의 책임 강화,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적인 보호 및 학습권 보장을 제시하고 있다(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2022). 이러한 사항을 2022년 조사에서 반영하고 교사의 권위 및 권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문항에 반영하였다.

경기도학생인권실태조사는 여건에 따라 오프라인과 온라인 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오프라인 종이 설문지가 응답률이 더 높다는 장점이 있으나, 2020년 이후 코로나19 범유행 상황에서 오프라인 조사가 어려워지며 온라인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초기에는 전수조사를 시행했지만, 2016년부터는 조사 효율성 제고를

위해 표집조사로 전환하였다. 조사규모는 경기도 내 약 30%의 학교에 해당하는 700개교(초등학교 300곳, 중학교 200곳, 고등학교 200곳)에서 표집한, 약 19,000여 명의 학생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도 초등학교 300개, 중학교 200개, 고등학교 200개 학교를 표집하여, 학생, 보호자, 교사를 대상으로 2022.11.7~11.18 동안 온라인 조사를 시행하였다. 조사 대상 학년은 2021년과 같이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집틀 구성을 위해 2022년 학교알리미의 공시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조사는 경기도 25개 교육지원청과 지역규모(시/읍면)를 기준으로 층을 나누고, 해당 지역의 학교 비율에 따라 학교를 무선표집한 후 해당 학년의 2학년 학생을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고등학교의 경우 표집 이후 학교 유형별(일반고/자율고/특목고/특성화고) 분포를 확인하여 표집을 수정하였다. 또한, 2021년 표집 학교는 원칙적으로 표집에서 제외하였으나,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해당 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표집한 학교도 일부 존재한다.

## 2. 방법

이 연구에서 학생이 인식하는 교권에 관한 주요 요인 사이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분산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주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분석을 위한 모형 설계에서 사용한 주요 변수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기술한 변수에 관한 주요 사항은 <표 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1) 종속변수

본 연구는 학생의 교권에 대한 인식을 다룬 가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교권 존중 여부에 관한 문항을 중심으로 종속변수를 구성하였다. ‘교권존중’은 학생들의 교권에 대한 존중 수준을 평가한 문항으로, 2022년 조사의 설문지 ‘문항4번’을 표준화하여 사용하였다. 해당 문

항은 3개의 하위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사의 수업 방법, 생활 지도,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 수준을 4점 척도로 질문하고 있다. 이러한 문항은 교권의 다양한 측면 중에서도 특히 학생-교사의 관계에서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요소로서 교사의 교육할 권리와 전문적, 도덕적 권위를 바탕으로 교권을 정의한 기준 논의를 반영한다.

## 2)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학생인권과 교권에 관한 변수 그리고 배경변수 세 유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교권에 관한 변수, 학생인권에 관한 변수 두 유목에 해당하는 변수를 먼저 설명한다. 교권에 관한 변수의 주요 문항을 살펴보면, ‘학생인권-교권관계’는 설문지의 문항 3-1에 해당하며, ‘학생들의 인권의식이 향상되면 교권 보호도 증진될 것이다’에 관하여 질문한 4점 척도로 구성된 문항이다. ‘학생권리제한’은 설문지의 ‘문항3-3’에 해당하며, 학생의 인권은 학교 안의 학생, 교사의 관계 속에서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을 질문하고 있고, 4점 척도로 구성된 문항이다.

이어서 학생인권에 관한 변수 중 ‘인권조례 인지 여부’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인지 수준에 관한 문항으로 설문지의 ‘문항6’에 해당하며, 더미변수로 구성하였다. ‘인권조례 효용 인식’은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 보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으로 ‘문항6-1’에 해당하며,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책무조항 인식여부’는 설문지 ‘문항7번’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제4조 학생책무에 관한 조항을 알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으로 더미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책무조항 태도’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4조의 학생 책무에 관한 조항에 대한 태도를 질문한 내용으로 4점 척도로 구성된 변수이다. 학생이 인지하는 인권 존중 수준 및 그 밖의 활동에 관한 문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인권존중수준인식’은 설문지 ‘문항8번’을 산술평균으로 표준화한 변수로, 가정, 학교, 우리나라, 온라인 공간에서 얼마나 인권을 존중받고 있는지를 질문한 문항이다. ‘교내

인권존중인식'은 설문지 '문항9번'을 표준화한 변수로, 학교 구성원 간의 인권을 존중하는 수준에 관한 질문으로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직원 상호 간의 인권 존중 수준을 질문하는 문항이다. '인권관련활동 수준'은 설문지 '문항7-3-1'부터 '문항7-3-6'까지의 문항을 산술평균으로 표준화한 것으로 인권 지식에 대한 학습,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에게 대한 인권 존중하기, 인권 보호 활동에 참여하기 등 인권 관련 활동 수준을 측정하는 문항이며,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 3) 배경변수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 주요 요인을 통제하기 위한 배경변수는 학생 인권과 교권에 관한 요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요인들로, 위의 변수들에 대한 통제 변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학교급'은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생의 효과를 보기 위한 더미변수로 구성하였다. '성별'은 남성 및 응답을 거부한 표본을 기준 변수로 재구성한 더미변수를 활용하였다. '취약계층여부'는 다문화가정, 조손 가정 등의 여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문항을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표본을 기준 변수로 재구성한 더미변수, '지역'은 읍면 지역을 기준으로 재구성한 더미변수이다.

<표 1> 모형의 주요 변수 설명

변수	변수명	변수설명	문항 번호 (학생용기준)
종속변수	교권존중수준	교사의 수업 방법, 생활지도,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 수준(4점 척도), 3개 문항의 평균	4번
독립변수: 교권	학생인권과 교권의 관계에 관한 인식	학생들의 인권의식이 향상되면 교권 보호도 증진될 것이다(4점 척도)	3-1번
	학생 권리 제한	학생의 인권은 학교 안의 학생, 교사의 관계 속에서 제한될 수 있다(4점 척도)	3-3번
독립변수: 학생인권	인권조례 인지 여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인지 여부 (모른다 = 0, 안다 = 1)	6번
	인권조례 효용 인식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 보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인식(4점 척도)	6-1번
	학생채무조항 인식	학생인권조례의 제4조 학생 채무에 관한 조항을 알고 있는지에 관한 여부 (모른다 = 0, 안다 = 1)	7번
	학생채무조항 태도	학생 채무조항에 대한 동의 정도	7-1번
독립변수: 학생인권	인권관련 활동 수준	학생의 채무 지키기 활동 수준 (6개 문항 평균)	7-3-1~6번
	인권존중 경험	가정, 학교, 우리나라, 온라인 공간에서 인권을 존중받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4점 척도), 4개 문항 평균	8번
	교내인권존중인식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직원 상호 간의 인권 존중 수준(4점 척도), 3개 문항 평균	9번
배경변수	성별	여성:1, 남성 및 응답거부:0	별도 생성
	지역	도시(동):1, 비도시(읍면): 0	별도 생성
	취약계층 여부	빈곤가정, 다문화탈북가정, 한부모, 조손 가정, 장애인, 운동선수 :1, 기타:0	별도 생성

## IV. 결과

### 1. 학생의 교권 존중 인식과 인권 존중 경험

먼저, 연구의 주요 가설인 학생의 교권에 대한 인식과 인권 존중 경험 사이의 상관성을 추정하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초, 중, 고 모든 학교급에서 「경기도학생인권조례」를 모른다고 응답한 집단은 이름만 들어봤거나 어떤 내용인지도 알고 있는 집단에 비해서 교권 존중 수준이 낮은 경향이 나타난다. 또한 모든 학교급에서 「경기도학생인권조례」 도움 정도를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교권 존중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 학생 인권에 관한 관심과 인식이 교권 존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

<표 2>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인지 여부에 따른 교권 존중 수준

학교급	모른다	이름만 들어봤다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내용인지도 알고 있다	전체	F
초	3.529	3.615	3.559	3.563	16.95***
중	3.259	3.369	3.425	3.317	50.19***
고	3.192	3.279	3.267	3.239	13.83***

<표 3> 경기도학생인권조례 도움 정도에 따른 교권 존중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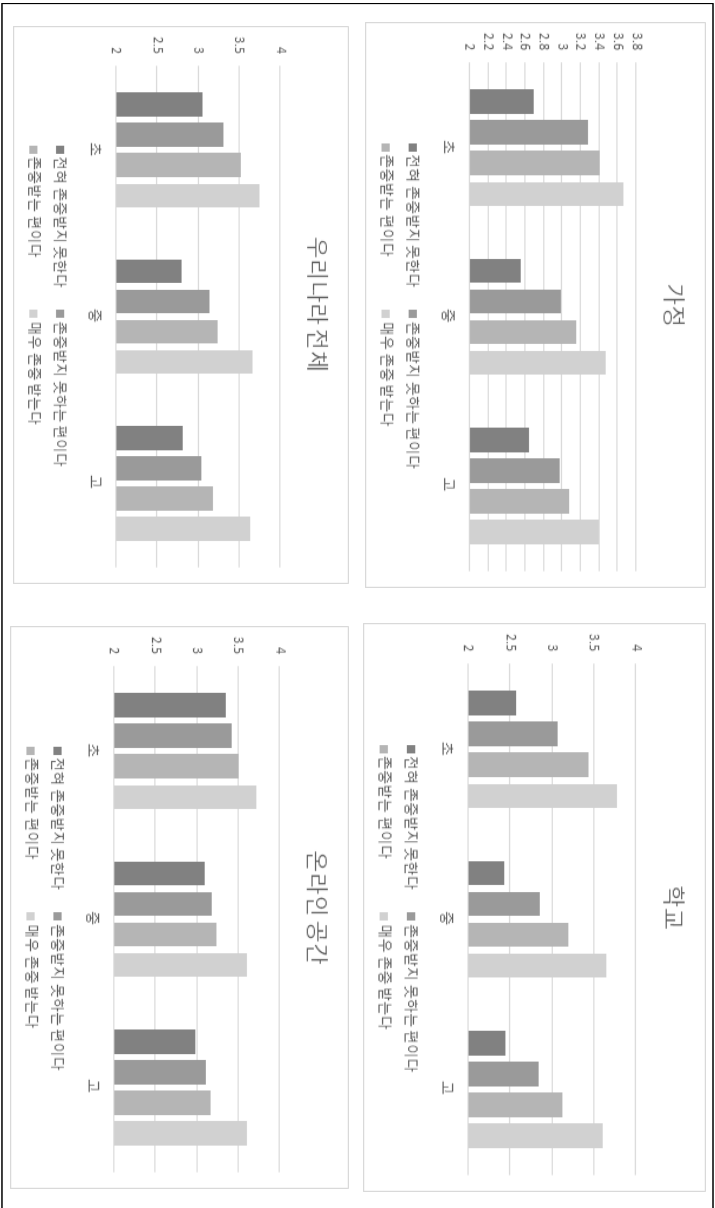
학교급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F
초	3.272	3.191	3.495	3.761	3.563	211.11**
중	2.884	3.090	3.310	3.692	3.317	382.53***
고	2.888	3.072	3.258	3.679	3.239	197.32***

<표 4> 학생 인권과 교권 간의 상보적 관계 인식에 따른  
교권 존중 수준

학교급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F
초	2.773	3.273	3.511	3.762	3.563	229.63***
중	2.755	3.131	3.232	3.582	3.317	357.27***
고	2.831	3.073	3.143	3.498	3.239	194.47***

\*주: ‘학생들의 인권의식이 향상되면 교권 보호도 증진될 것이다’에 대한 의견

모든 학교급에서 “학생들의 인권의식이 향상되면 교권 보호도 증진될 것이다”에 동의하는 학생일수록 교권 존중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학생인권과 교권이 상보적 관계임을 인식하는 것이 교권 존중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더불어, 모든 학교급에서 본인의 인권존중 수준과 교권 존중 수준 간에 체계적인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즉, 가정과 학교, 우리나라 전체, 온라인 공간에서 본인의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느낄수록 교권 존중 수준도 높아지는 양상이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학교에서 인권존중 수준에 따른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아동청소년기 연령이나 학교급에 따라 인권의식의 발달 수준이 달라짐을 보여준다는 점(이승미, 1999; 구정화, 1998; 박상준, 2010)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는 학생들의 교권 존중 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학생인권에 대한 존중이 함께 증진되어야 함을 추론할 수 있음을 보인다.



<그림 1> 나의 인권준중 수준에 따른 교권 존중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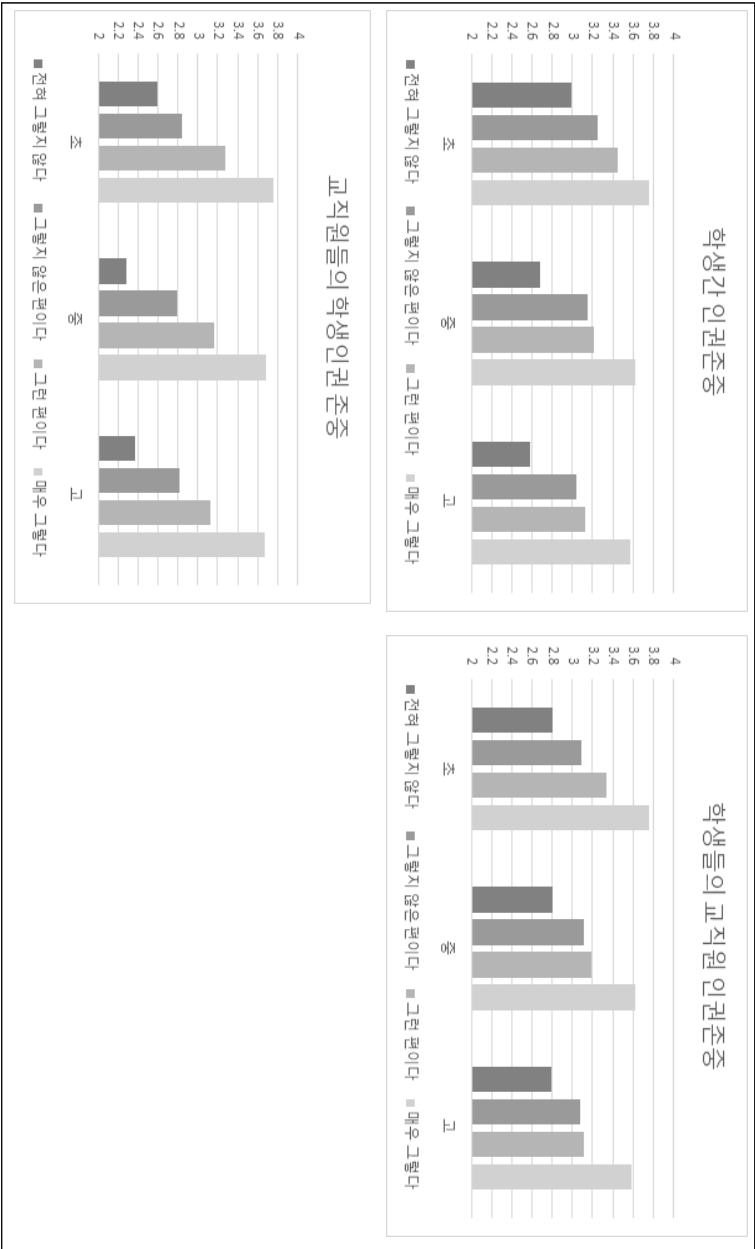
<표 5> 나의 인권준중 수준에 따른 교권 준중 수준

영역	학교급	전혀 준중받지 못한다	준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준중받는 편이다	매우 준중 받는다	전체	F
가정	초	2.700	3.281	3.406	3.661	3.563	151.47***
	중	2.549	2.985	3.155	3.475	3.317	349.59***
	고	2.649	2.980	3.083	3.396	3.239	162.21***
학교	초	2.571	3.068	3.440	3.776	3.563	431.04***
	중	2.437	2.853	3.197	3.651	3.317	847.06***
	고	2.440	2.844	3.126	3.609	3.239	492.69***
우리나라 전체	초	3.051	3.314	3.522	3.756	3.563	214.09***
	중	2.807	3.140	3.244	3.666	3.317	458.20***
	고	2.817	3.046	3.186	3.643	3.239	271.42***
온라인 공간	초	3.350	3.426	3.517	3.726	3.563	96.76***
	중	3.097	3.180	3.239	3.612	3.317	288.12***
	고	2.987	3.115	3.173	3.604	3.239	197.60***

&lt;표 5&gt; 나의 인권존중 수준에 따른 교권 존중 수준

영역	학교 급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 받는다	전체	F
가정	초	2.700	3.281	3.406	3.661	3.563	151.47***
	중	2.549	2.985	3.155	3.475	3.317	349.59***
	고	2.649	2.980	3.083	3.396	3.239	162.21***
학교	초	2.571	3.068	3.440	3.776	3.563	431.04***
	중	2.437	2.853	3.197	3.651	3.317	847.06***
	고	2.440	2.844	3.126	3.609	3.239	492.69***
우리나라 전체	초	3.051	3.314	3.522	3.756	3.563	214.09***
	중	2.807	3.140	3.244	3.666	3.317	458.20***
	고	2.817	3.046	3.186	3.643	3.239	271.42***
온라인 공간	초	3.350	3.426	3.517	3.726	3.563	96.76***
	중	3.097	3.180	3.239	3.612	3.317	288.12***
	고	2.987	3.115	3.173	3.604	3.239	197.60***

이어서 아래 <그림 2>, <표 6>은 학생 자신이 인식하는 인권 존중 수준과 교권 존중 인식 사이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로, 교내에서 학교 구성원 간 상호인권 존중 수준에 따른 차이도 크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든 학교급에서 학생 사이의 인권 존중, 학생들의 교직원 인권 존중, 교직원의 학생 인권 존중 정도가 높다고 인식할수록 교권 존중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주목할만한 점은, 교직원의 학생 인권 존중 정도에 따른 차이가 큰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전반적으로 초등학생보다는 중, 고등학생들이 학교의 상호인권 존중 문화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 학생들이 많으므로,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학생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음을 추정할 수 있는 결과이다.



<그림 2> 학교 구성원 사이의 상호인권존중 수준에 따른 교권 존중 수준

<표 6> 학교 구성원 사이의 상호인권존중 수준에 따른 교권 존중 수준

인권 존중 대상	학교 급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F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한다	초	2.996	3.254	3.446	3.763	3.563	286.04***
	중	2.682	3.156	3.212	3.627	3.317	483.78***
	고	2.587	3.044	3.121	3.574	3.239	311.85***
학생들은 교직원들의 인권을 존중한다	초	2.803	3.090	3.338	3.756	3.563	440.76***
	중	2.805	3.108	3.186	3.626	3.317	526.58***
	고	2.789	3.082	3.119	3.579	3.239	279.45***
교직원들은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한다	초	2.589	2.837	3.276	3.755	3.563	708.40***
	중	2.285	2.797	3.159	3.681	3.317	1348.39***
	고	2.370	2.818	3.131	3.673	3.239	711.84***

## 2. 학생이 인식하는 교권 존중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분석

앞서 학생 인권과 교권에 관한 주요 변수 사이의 분산분석을 통해 학생의 인권 존중에 관한 긍정적 경험이 교권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상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래 다중회귀분석에서는 이러한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의 영향을 다중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의 분석 결과, 학생의 교권 존중 인식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먼저, <표 7>의 결과를 살펴보면, 학생 본인이 인권을 존중받고 있다고 인식할수록 교권 존중 수준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학생 스스로가 여러 영역(가정, 학교, 온라인, 우리나라 전체)에서 인권을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교권 존중 수준도 증가할 수 있음을 보이는 결과로 앞선 분산분석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학생의 인권 존중에 대한 긍정적 경험이 학생들의 교권 존중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설을 지지할 수 있는 결과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학생의 교권 존중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을 확인한 결과, 지역과 취약계층 여부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인권 보호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할수록 교권 존중 수준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권조례에 대한 효능감이 클수록 교권에 대한 긍정적 존중과 연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학생의 책무에 관한 문항을 잘 알고 있을수록 교권 존중 수준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의 책무를 강조하는 경향이 오히려 교권 존중에 부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학생인권과 교권의 관계를 상보적이라고 인식할수록, 학생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고 인식할수록, 학교 구성원 간에 상호인권 존중 수준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인권 관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교권 존중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여학생이 남학생과 비교하면 교권 존중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초등학생과 비교하면 교권 존중 수준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학교급을 나이의 대리변수라고 가정하였을 때, 나이가 증가할수록 교권 존중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이는 후속 연구의 분석을 통해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7> 교권존중 인식에 대한 회귀분석

종속변수: 교권 존중에 대한 인식 (N=19,061)		B (SE)	$\beta$	t	VIF
학생 권리와 교권	학생인권-교권관계	.099*** (.030)	.118	19.313	1.169
	학생권리제한인식	.063*** (.005)	.088	15.228	1.048
	인권존중수준인식	.144*** (.004)	.130	17.741	1.707
	교내인권존중인식	.253*** (.008)	.252	31.806	1.983

	인권관련활동	.165*** (.008)	.148	19.895	1.748
	인권조례효용	.059*** (.005)	.074	11.042	1.430
	조례인지	.021** (.007)	.018	3.060	1.114
	책무조항인지	-.030*** (.008)	-.023	-3.896	1.120
	책무조항태도	.079*** (.006)	.081	12.273	1.363
학교급	중학교	-.096*** (.008)	-.084	-12.396	1.463
	고등학교	-.135*** (.009)	-.102	-14.885	1.484
배경변수	성별(여성)	.028*** (.006)	.025	4.393	1.019
	지역(도시)	-.002 (.008)	-.001	-.251	1.027
	취약계층	.004 (.010)	.002	0.417	1.011
모형설명	R2 = .397 Adjusted R2 = .396 F = 894.306*** Dubin-Watson 1.974				

\*p<.050 \*\*p<.010 \*\*\*p<.001

이어서 <표 8>과 같이 학교급별로 표본을 구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교급별 약간의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초중고 공통으로 나타나는 주요 변수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생의 인권존중 수준 인식을 살펴보면 학생들은 본인의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느낄수록, 학교에서 학내 구성원이 서로 인권을 존중한다고 인식할수록 학생이 교권을 존중하는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특히 교내 인권 존중 수준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다른 요인에 비하여 큰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생의 권리와 교권을 상호보완적으로 인식할수록(학생인권-교권관계 변수), 학생 권리 제한에 긍정적일수록, 그리고 학생이 인권 관련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할수록 교권 존중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하여,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인권 개선에 대한 효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학생 책무 문항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수록 교권 존중 수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를 확인했다.

<표 8> 학교급별 교권존중 인식에 대한 회귀분석

변수		초등학생(n=6,069)		중학생(n=8,405)		고등학생(n=4,587)	
종속변수: 교권 존중에 대한 인식		B (SE)	β	B (SE)	β	B (SE)	β
학생 권리와 교권	학생인권-교권관계	0.120*** (0.010)	0.140	0.087*** (0.008)	0.105	0.096*** (0.010)	0.126
	학생권리 제한인식	0.056*** (0.007)	0.081	0.052*** (0.006)	0.073	0.086*** (0.008)	0.126
	인권존중 수준인식	0.109*** (0.014)	0.102	0.149*** (0.013)	0.137	0.182*** (0.016)	0.170
	교내인권 존중인식	0.300*** (0.014)	0.294	0.222*** (0.012)	0.224	0.244*** (0.016)	0.242
	인권관련 활동	0.144*** (0.015)	0.132	0.200*** (0.013)	0.180	0.132*** (0.016)	0.120
	인권조례 효용	0.040*** (0.010)	0.050	0.062*** (0.008)	0.076	0.072*** (0.010)	0.096
	조례인지	-0.005 (0.012)	-0.005	0.035*** (0.010)	0.031	0.027* (0.013)	0.025
	책무조항 인지	-0.031* (0.013)	-0.026	-0.022 (0.012)	-0.017	-0.040** (0.015)	-0.032
	책무조항 태도	0.058*** (0.011)	0.062	0.097*** (0.010)	0.099	0.078*** (0.013)	0.080
배경 변수	성별 (여성)	0.05*** (0.011)	0.047	0.019 (0.010)	0.017	0.009 (0.013)	0.009
	지역 (도시)	0.058** (0.017)	0.035	-0.032** (0.011)	-0.025	0.010 (0.015)	0.008
	취약계층	-0.009 (0.018)	-0.005	0.015 (0.015)	0.009	0.003 (0.019)	0.002
모형설명		R2 = .342 Adjusted R2 = .341 F = 262.720*** Dubin-Watson 1.905		R2 = .375 Adjusted R2 = .374 F = 419.750*** Dubin-Watson 1.973		R2 = .381 Adjusted R2 = .379 F = 234.345*** Dubin-Watson 1.961	

\*p<.050 \*\*p<.010 \*\*\*p<.001

하지만, 다음과 같은 변수는 학교급(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따른 통계적 유의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변수들로, 세부적인 해석에 유의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먼저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인지 여부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표본에서만 통계적인 유의성을 보이며, 중학생과 고등학생 공통으로 조례를 인지하고 있을 때 교권 존중 수준에 정(+)의 상관성을 보인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학생 책무조항에 대한 인지 여부는 중학생을 제외한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표본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을 보인다. 또한 공통으로 교권 존중 수준에 부(-)의 상관성을 보여 학생 책무 조항을 알고 있는 경우 교권 존중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추정할 수 있는 결과이다.

배경변수에 따른 차이도 나타나는데, 성별의 효과는 초등학생 표본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으며, 여학생이면 남학생 및 응답을 거부한 학생에 비하여 교권 존중에 정(+)의 상관성을 보인다. 그리고 지역의 경우 초등학생, 중학생 표본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으며 초등학생은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교권 존중에 정(+)의 효과를, 중학생은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교권 존중에 부(-)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 V. 논의: 학생의 책무 중심 관점에서 보편적 인권 존중의 관점으로 이행 필요성

‘2022년 경기도학생인권실태조사’를 토대로 학생이 인식하는 인권 존중 수준과 교권에 대한 인식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인권 존중에 대한 긍정적 경험은 타자의 권리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들이 가정과 학교 등에서 본인의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느낄수록, 학교 내 여러 구성원 간에 서로 인권을 존중하는 수준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인권 관련 활동에 많이

참여할수록 학생이 교권을 더 많이 존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결국 주관적 인권 존중 경험이 자신을 포함한 타자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한 인식의 토대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외에도 학생 인권과 교권의 관계를 상호보완적이라고 인식하고 학생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고 생각할수록 학생의 교권 존중 수준이 높게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학생 인권과 교권이 단순히 경합하는 대립적 개념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는 결과이다. 결국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인권 개념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고, 본인의 인권이 존중받는 경험과 학교 구성원들 상호 간에 인권을 존중하는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인권뿐 아니라 타인의 인권에 대해 인식하고 책임감을 가진 시민적 덕성을 갖춘 권리 주체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학생인권조례를 알고, 도움이 된다고 인식할수록 교권 존중 수준이 높았지만, 책무조항을 인지하고 이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학생의 경우 오히려 교권에 대한 존중이 낮게 나타난다. 학생 책무조항에 동의할수록 교권 존중 수준이 높게 나타나기는 했지만, 단순히 학생 책무를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효과가 크지 않거나 없을 가능성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의 교육 현장에서 단순히 학생이 어떠한 권리에 대한 책무를 지니고 이것을 이행해야만 한다는 일방적, 권위적인 방식으로 책무를 강조하는 방향이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권위적인 접근을 통해 학생 책무를 학생에게만 부여하는 방식보다는, 학생 인권의 보장을 통해 인권의 보편적 성취가 가능하다는 점을 학교, 가정 등 일상에서 환기하는 것이 교권의 존중에도 보다 긍정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인권을 개별 행위자의 배타적 권리가 아닌 포괄적 권리 개념으로 학습하기 위한 토대가 결국 학생 스스로가 권리 주체로서 존중받는 경험에서 출발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점에서 ‘학생’ 인권만이 아니라 인권의 보편성에 입각한 인

권 개념을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이는 교육 현장 내의 인권 교육을 통해 자신만이 아니라 타인의 권리까지 인식하는 단계로 나아가도록 충분히 가르치고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는 구정화(2014b)의 주장과도 연결되는 부분이다. 또한 학생 인권과 교권을 분리하여 다루기보다는 교내에서의 긍정적 인권 존중 경험을 형성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는 교권 존중의 의무와 함께, 학생과 교사의 상호 존중에 기초한 수평적 문화 조성도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학교급이 올라감에 따라 교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인권 존중 경험을 높일 방안과 함께, 학교급에 따른 인권 교육내용의 차별화가 필요함도 확인하였다. 이는 학교급이 올라감에 따라 학생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생의 비중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보고한 기존의 연구에서도 시사하고 있는 지점이다(김현수 외, 2016: 186). 권리 주체로서의 긍정적 경험이 학습 수준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유형, 교육 과정의 차이, 청소년의 발달 단계에 따라 다를 수 있기에, 이에 관한 세부적인 접근이 필요할 수 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의 구체적 적용과 실천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개입도 필요해 보인다. 이는 기존 교사의 학생인권조례 순응 정도에 관한 연구에서 교사-학생 사이의 갈등 책임을 조례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경향이 조례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고한 것과 상통한다(김선희·최진식, 2020).

이러한 결과는 전체적으로, 학교라는 제도화된 교육 현장에서의 인권 감수성 제고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권 문화의 확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학생에게 단순히 책무를 부여하고 인정할 것을 요청하는 방식만으로는 현재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생 인권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어렵다. 즉, 한국의 교육 현장만 아니라 학생들의 가정, 사회 등 우리 사회 전반의 인권 존중 경험이 중요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인권 문화의 전사회적 확장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의 아동·청소년으로서의 특수성을 반영한 접근을 종합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가치를 형성하는 과정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권리와 성인인 교원의 권리를 동질적이고 대립적으로 가정하는 ‘학생 인권 대 교권’의 대립적 프레임으로는 현재 학생인권조례와 교육 현장의 권리 침해 문제 양자 모두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없다. 특히 교육 현장의 제도적 미비와 모순, 교원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직무 부담 등으로 초래되는 학생과 교원 사이의 다양한 갈등과 쟁점을 ‘학생 인권’에서 기인한 문제로 치환하는 담론 역시 지양해야 할 부분이며, 이 과정에서 현장의 구체적 교육 제도와 포괄적 인권에 관한 논의를 결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오늘날 점차 시장화되고 있는 교육 시장과 제도, 문화에 의해 초래되는 교육 현장의 문제에 주목하며, 교육을 구성하는 행위자 모두가 인권 의식을 확장하기 위한 시민성에 관한 교육 등의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현재 ‘학생’ 인권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교육 제도 내의 학생만을 포괄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 밖의 아동·청소년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인권 개념을 확장하는 등 인권 존중에 대한 일상의 긍정적 경험을 확장할 수 있는 우리 사회 전반의 인권 감수성 제고도 필요하다.

## VI. 마치며

‘2022 경기도학생인권실태조사’를 토대로 학생이 인식하는 인권 존중 수준과 교권에 대한 인식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인권 존중에 대한 긍정적 경험은 타자의 권리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들이 가정과 학교 등에서 본인의 인권이 존중받겠다고 느낄수록, 학교 내 여러 구성원 간에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수준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인권 관련 활동에 많이 참여할수록 교권도 더 많이 존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결국 주관적 인권 존중 경험이 자신을 포함한 타자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한 인식의 토대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외에도 학생 인권과 교권의 관계를 상보적이라고 인식하고 이러한 필요를 위해서는 학생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고 생각할수록 교권 존중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학생이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는 경험을 하고 인권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을 때 교권에 대해서도 존중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아짐을 추론할 수 있는 결과이다. 결국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인권 개념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고, 본인의 인권이 존중받는 경험을 통해서, 학교 구성원들 상호 간에 인권을 존중하는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인권뿐 아니라 타인의 인권에 대해 인식하고 책임감을 가진 주체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하지만 이 연구는 학생의 인식을 중심으로 학생 인권과 교권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도 내포하고 있다. 첫째, 교권 개념은 여전히 좀 더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최근 미디어를 통해 교권 침해에 관한 논의가 증가하였으나, 학생 인권에 대한 고민과 논의에 비해 단선적으로 정리된 측면이 있다. 교권 개념에 더욱 실질적으로 접근하려면 보다 풍부한 학술적 논의를 통해 현재 교사의 권위와 권리, 권력으로서 이해되는 교권 개념을 엄밀하게 다루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자료가 학생을 대상으로 하므로 교권을 측정하는 변수가 교사의 학습 지도에 관한 내용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권의 어떤 측면을 조작적으로 정의하느냐에 따라 변수 사이의 유의성과 결과 해석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학생 관점에서의 교권 존중에 관한 문항 이외에 교권을 측정하는 변수가 수업 상황 이외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한다면 또 다른 결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접근은 주 응답자인 학생의 문항 이해도와 실태조사라는 목적을 고려할 때 보류하였음을 밝혀둔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학생의 경험과 인식을 바탕으로 학생 인권과 교권의 관계를 분석하였다는 차별성을 갖는다. 교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에서 학생이 주요 이해관계자이자 때로는

침해의 잠재적 주체로 다루어지기도 하는 상황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여전히 학생 스스로 긍정적인 인권 보장 경험을 갖는 것이 교권의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교권의 침해 또는 하락을 우려하는 논의에서도 사제관계를 피해자-가해자의 이분법적 구도로 상정하기보다는 서로의 권리가 학교 안에서 충분히 존중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확인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최근 교권 침해에 관한 논의들이 자극적인 피해 사례나, 일부 사례에 대한 성급한 일반화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고, 향후 학생 인권 및 교권 연구와 관련한 논의에 더욱 풍부한 근거들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논문접수일: 2023. 5. 23, 논문심사일: 2023. 6. 12, 게재확정일: 2023. 6. 20)

## 참고문헌

-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2022. 『제18대(제5대 주민직선)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 백서: 경기교육 새롭게』. 수원: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 구정화. 1998. “초등학생의 인권 개념 형성에 관한 연구.” 『공주교대논총』 35(2): 145-166.
- 구정화. 2014a. “학생인권조례 시행 후 학교 인권 상황에 대한 학생의 인식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46(1): 1-26.
- 구정화. 2014b. “학생의 인권보장 정도와 교권 존중과의 관련성.” 『법과인권 교육연구』 7(3): 1-19.
- 권순정·오덕열. 2021. “권리기반정책 및 실천에 근거한 학생인권 정책 방향 모색: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 실천 경험을 중심으로.” 『교육정치학연구』 28(1): 155-181.
- 김 념. 2014. “‘학생인권과 교권’에 관한 몇 가지 ‘오해’풀어가기.” 『생명연구』 31: 75-117.
- 김선희·최진식. 2020. “학생인권조례 순응요인에 관한 연구: 수도권 소재 학교 교사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유럽헌법연구』 32: 343-379.
- 김운중. 2013. “교권보호조례를 통해서 본 교권의 재음미.” 『한국교원교육 연구』 30(4): 117-138.
- 김위정·김종우·이가람. 2021. 『2021 경기도 학생인권 실태 조사』. 수원: 경기도교육연구원.
- 김정래. 2014. “권리와 권위의 차원에서 본 교권의 의미.” 『교육철학』 52: 1-27.
- 김 철. 2012. “학교교육에서 학생의 인권과 교권에 관한 연구- H. Nohl의 교육적 관계론의 관점에서.” 『교육사상연구』 26(2): 1-19.
- 김현수·김성철·김은경·김형욱·박선아·안동현·이정숙. 2016. 『학교생활에서 학생의 인권보장 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김희진. 2022.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당사국의 책무.” 『인권연구』 5(2):

67-104.

- 박상준. 2010. “인권판단력의 발달에 관한 연구.” *사회과교육* 49(1): 27-45.
- 박재윤. 2011. “학생인권과 교권의 조화 어떻게 이를 것인가.” 『*사학*』 128: 36-41.
- 박중훈. 2021. “학생인권조례 10년, 그 성과와 한계: 소위 ‘학생인권법’ 제정 논의에 부쳐.” 『*인권연구*』 4(2): 125-175.
- 신강숙. 2021. “학생인권 보장 현황과 입법 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 학생인권조례를 통하여 본 학생인권의 나아갈 길.” 『*교육법학연구*』 33(2): 131-159.
- 오승호. 2011. “교권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연구 -법률유보원칙을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43(3): 75-100.
- 이기일·성열관. 2012. “학생인권은 교권에 대립하는가?: 교권 대 학생인권 프레임에 대한 비판적 담론분석.” 『*교육사회학연구*』 22(4): 171-197.
- 이덕난. 2014. “기획특집: 교권과 학생 인권:교권조례 및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본 교권의 의미 분석.” 『*교육철학*』 52: 29-53.
- 이봉림. 2017.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법적 고찰.” 『*홍익법학*』 18(4): 199-225.
- 이승미. 1999. “인권의식 발달 경향에 관한 연구.” 『*인간발달연구*』 6(2): 103-120.
- 이양희·신혜원·백진주. 2014.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시행 분석: 청소년의 권리증진 기반 조성 과제를 중심으로.” 『*아동과 권리*』 18(4): 545-573.
- 이정연·윤희정·정우진·이혜선. 2016. 『2016 경기도 학생인권 실태조사』. 수원: 경기도교육연구원.
- 이정연·이용민·김명량·안수현·이혜선. 2020. “학생의 인권의식에 대한 영향 요인 탐색.” 『*인격교육*』 14(4): 85-104.
- 정순원. 2010. “학생체벌을 둘러싼 학생의 인권과 교권과의 관계.” 『*법과인권교육연구*』 3(3): 65-87.
- Bivins, Thomas H. 2006. “Responsibility and accountability.” In: Fitzpatrick, Kathy, and Carolyn Bronstein (Eds). *Ethics in Public Relations: Responsible Advocacy*,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 Burke, John P. 1986. *Bureaucratic Responsibility*. Baltimore: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
- Dunn, Delmer. D. 1999. "Mixing Elected and Nonelected Officials in Democratic Policy." in Przeworski, A., Susan C. Stokes, and Manin, B. (Eds.) *Democracy, Accountability, and Representation (Vol. 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reund, Ludwig. 1960. "Responsibility, Definitions, Distinctions, and Applications in Various Contexts." In Carl J. Friedrich, (Eds), *Responsibility*. New York: Liberal Arts Press.
- Harris, Baine R. 1976. *Authority: A Philosophical Analysis*. Tuscaloosa: The University of Alabama Press.
- Jackson, Michael. 2009. "Responsibility versus accountability in the Friedrich-Finer debate." *Journal of Management History* 15(1): 66-77.
- Kaler, John. 2002. "Responsibility, accountability and governance." *Business Ethics: A European Review*, 11(4): 327-334.
- McGrath, Stephen Keith, and Stephen Jonathan Whitty. 2018, "Accountability and responsibility defined."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ing Projects in Business*, 11(3): 687-707.
- Nash, Paul. 1966. *Authority and Freedom in Education*.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 Pennock, Roland. 1960. "The Problem of Responsibility." In Carl J. Friedrich, (Eds), *Responsibility*. New York: Liberal Arts Press.
- Shoemaker, David. 2011. "Attributability, Answerability, and Accountability: Toward a Wider Theory of Moral Responsibility." *Ethics*, 121(3): 602-632.

<Abstract>

**Student Perceptions of Student Rights and Teacher Rights  
: Focusing on the 2022 Gyeonggi-do Student Human Rights Survey**

Kim, Jongwoo\* · Kim, Wui Jeong\*\* · Lee, Garam\*\*\*

This study is a study to verify the hypothesis about the rivalry between student rights and teacher rights. Previous studies on student rights and teacher rights tended to support complementary perspectives. However, this study attempts a multilateral approach using variables dealing with various aspects of student rights and teacher rights. This is becaus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 of respect for rights experience on the perception of teacher right by analyzing student's experience of respecting their rights and their perception of teacher right. Data of this study is '2022 Gyeonggi-do Student Human Rights Survey' data and conducted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based on questions estimated to affect students' perceptions of respect for teacher rights.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a correlation with student's positive experiences on human rights might affect positive recognition of teacher rights. This means the experience of respecting human rights in our society, including the home and society, not just within the school, can be crucial.

Keywords: student rights, teacher rights, Gyeonggi-do Student Rights Survey, ordinance of student rights, accountability

---

\* Yonsei University

\*\* Gyeonggi Institute of Education

\*\*\* Yonsei University